

# 순천대학교 기초·보호학문진흥위원회규정

제정 2015. 6. 10.

개정 2018. 3. 30.

개정 2020. 2. 27.

**제1조(목적)** 기초·보호학문 등의 지원·육성을 위하여 순천대학교 기초·보호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기초·보호학문은 다른 학문의 기초 및 보호가 필요한 인문학(문학, 역사학, 철학 등), 자연과학(수학, 물리학, 화학, 생물학, 지구과학 등) 등의 학문을 의미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순천대학교 기초·보호학문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초학문 및 그 밖에 보호·육성이 필요한 학문분야의 범위에 관한 사항
2. 기초·보호학문 지원 육성을 위한 재정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총장 또는 위원회가 기초·보호학문 분야 등의 지원·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,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양융합대학장이 되며, 위원은 교무부처장 및 기초·보호학문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(개정 2018. 3. 30.)

**제5조(임기)**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고,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소위원회)** ① 기초·보호학문 진흥 활동을 지원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9조(운영 지원)**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운영세칙)**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5. 6. 1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3. 30.)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 개정)

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순천대학교 기초·보호학문진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교양기초교육원장”을 “교양융합대학장”으로 한다.

⑤부터 ⑩까지 생략

제3조(모집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) <생략>

부 칙<2020. 2. 27.>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생략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

①~④ 생략

⑤ 순천대학교 기초·보호학문진흥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본문 중 부위원장은 “교양융합대학장”을 “교육혁신본부장”으로 한다.

⑥부터 ⑧까지 생략